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6가단5076226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최현우, 김인일, 이태환, 김동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본사를 두고 자동차 연료절감 및 배기가스 감소장치인 E(이하 ‘이 사건 E’라 한다)를 생산하여 공급한 사람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E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5. 6.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후 이 사건 E를 국내에서 판매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사내이사 G은, 2015. 5.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이 사건 E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국내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E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한다)과 “을”(G을 지칭한다)간의 대한민국 내 상품판매를 위한 총판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서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 및 물품의 내용)

(1) “갑”이 생산 및 판매하는 자동차용 연비 개선(혹은 매연감소)을 위한 제품이며 공급

가능한 모델명은 사각형제품(H), 원형제품(I)으로 한다(한국 내 상표등록 명칭 - E)

제3조(을의 영업활동 지역 및 범위)

- (1) “을”의 총판권 영업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 (2) “갑”은 계약기간 동안 (1)항의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을”과의 계약한 제2조 (1)항의 제품은 “을”에게 공급해야 함을 우선시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 (1) 본 계약은 계약일부터 3년간으로 2015. 5. 29.부터 2018. 5. 28.까지로 하되 5조 4항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는 자동 연장할 수가 있다.
- (2) 본 계약의 조건은 “을”은 “갑”에게 초도물품구매 명목으로 일만 개를 구매계약하고 구매계약금 명목으로 삼천 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지불하며 “갑”은 “을”과 약정한 총 일만 개 상품 중 칠천 개의 상품이 “갑”으로부터 구매완료된 시점에서 “갑”이 계약시에 보증금으로 수령한 삼천 개에 해당하는 상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 (3) “을”은 일만 개의 상품을 2016. 4. 30까지(2015. 9. 30. 삼천 개, 12. 30. 삼천 개, 2016. 4. 30. 사천 개) 구매 완료하며 상품대금은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당일에 갑에게 지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 “갑”은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을”이 구매하기로 약정한 초도물량 구입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상품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7) “을”이 본 계약상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 (8) “을”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지시에는 “갑”은 “을”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한다.

제23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일과 동시에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 중 일

부 금액 이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 6. 15.까지 지급한다.

제24조(기타사항)

(2)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상품의 제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내에서 법인회사를 각각 설립한 후에 본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단, 미작성시에도 본 계약서대로 유효함).

2) G은 2015. 6.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2015. 5. 29. 및 2015. 6. 16.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그 후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유죄판결 확정

1) 피고는 2016. 9. 29. G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273), 위 법원은 2019. 5. 17.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에게 "저희가 개발한 E 제품을 자동차에 넣어두면 연비 15%~30%이상 절감효과 등이 있어 이를 판매하면 대박이 나니 우리 회사와 한국 총판계약을 하자"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5. 5. 29. 부산 동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5. 6. 16. 잔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E라는 제품은 자동차 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그 제품에 관하여 어떤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사실상 한국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19노1593), 2020. 3.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도902)이 각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9.부터 2015. 6. 16.까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보증금을 편취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비록 위 형사판결에서 피해자가 G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 명의의 이 사건 계약이 G이 이 사건 E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그 회사가 G으로부터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E를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락하였던 점, ② 이에 G은 2015. 6.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E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였던 점, ③ G은 2015. 5. 29. 및 2015. 6. 16.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피고는 G이 아닌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 3항에 정한 바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물론 피고와

G도 이 사건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G이 아닌 원고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피해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사기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이 사건 E 3,000개를 구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7. 20.까지 이 사건 E를 1,980개밖에 구매하지 않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 1억 89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10. 7.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이 사건 E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합계 71,524,783원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억 8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및 위 71,524,783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명목의 채권 및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지도 아니하는바, 그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 2)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